

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·하청 교섭은 노동조합법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31.(월) 경향신문,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, 하청 교섭에 응한 원청 5곳 중 1곳꼴

8.30.(일) 8.31.(월) 연합뉴스, 노란봉투법 반년, 원하청 실교섭 102곳...
4곳중 1곳도 안돼

2. 설명 내용

- 8.14일 기준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은 456개소임.

- 이중 자율적인 교섭절차 진행 또는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 등에 따라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원하청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은 149개소*이며,

* 456개소 중 52개소는 ▲노동위원회 결정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 (35개소) ▲사용자성 불인정(11개소) ▲지방노동위원회 판단 진행중(6개소)인 사업장임

- 그 가운데 102개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노사간 교섭 단계에 진입하는 등 대부분 노동조합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중임

- 나머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255개소에 관해서는

- 민간부문(131개소)의 경우 건설업(84개소)이 대다수로, 노동조합에서 대형 건설사 대상으로 교섭절차를 비교적 우선 진행하고 남은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 교섭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
 - 공공부문(124개소)의 경우 대부분은 돌봄, 생활폐기물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(106개소)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, 현재 돌봄 등 노정협의체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위원회 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- 따라서, 이러한 사업장은 일률적으로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임
- 한편, 8.18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이 이루어진 148개소 중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곳은 10건에 그쳐 대다수 원청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음
- 정부는 원하청 교섭이 노동조합법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지속 지도하고, 노사간 교섭이 촉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	책임자	과 장	오수학 (044-202-7372)
		담당자	사무관	신건영 (044-202-7395)

